

질의일자 : 2011. 9. 23(금)

순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0923-1	<p>1. 당사는 독립채산제로 전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제주지사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물류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사의 제주지사는 사업자 등록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나 본점의 소재지는 서울시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되어있는 바 우리회사의 제주지사가 지역업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p> <p>2. 사업기간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특수조건 제31조제2항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갑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경우 사전에 어느 시점에 통보가 가능한 사항인지요?</p>	<p>1. 지역업체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사 소재지가 입찰공고인 전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p> <p>2. 계약기간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바와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제시되어 있는 1년 연장건은 우리공사 정책에 의해 판단될 부분입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3-1	<p>1. 입찰공고문상 C권역은 서귀포항, 성산항으로 되어 있으나, 질의답변서상 상기 2개항 이외에도 다른 항 (예 : 제주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지역항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연간 물동량을 책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그 비율을 제안사가 임의로 조정하고 제주항을 더 많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p>	<p>1. 운영물량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C권역의 추정물량은 지역항 이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산정된 물량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p>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3-2	<p>1. 팔레트 운영비용 산출 및 운영안 제안을 위해 2010년 평균재고량이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의 정책에 의해 평균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계약단가 외에 팔레트 운영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1. 2010년 월 말 재고현황 (단위 : 톤)</p> <table border="1" data-bbox="1211 421 2136 1107"> <thead> <tr> <th>구분</th> <th>공사</th> <th>항만</th> <th>소계</th> </tr> </thead> <tbody> <tr><td>1월</td><td>10,995</td><td>38,123</td><td>49,118</td></tr> <tr><td>2월</td><td>11,787</td><td>46,669</td><td>58,456</td></tr> <tr><td>3월</td><td>11,588</td><td>43,425</td><td>55,013</td></tr> <tr><td>4월</td><td>6,250</td><td>28,025</td><td>34,275</td></tr> <tr><td>5월</td><td>10,339</td><td>24,975</td><td>35,314</td></tr> <tr><td>6월</td><td>11,314</td><td>24,554</td><td>35,868</td></tr> <tr><td>7월</td><td>12,538</td><td>15,858</td><td>28,396</td></tr> <tr><td>8월</td><td>2,925</td><td>8,313</td><td>11,238</td></tr> <tr><td>9월</td><td>1,084</td><td>3,493</td><td>4,577</td></tr> <tr><td>10월</td><td>1,950</td><td>8,160</td><td>10,110</td></tr> <tr><td>11월</td><td>1,752</td><td>9,063</td><td>10,815</td></tr> <tr><td>12월</td><td>3,157</td><td>4,725</td><td>7,882</td></tr> </tbody> </table> <p>※ 상기 물량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 제품입니다.</p> <p>또한, 팔레트 운영에 대하여는 “0922-2”의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공사	항만	소계	1월	10,995	38,123	49,118	2월	11,787	46,669	58,456	3월	11,588	43,425	55,013	4월	6,250	28,025	34,275	5월	10,339	24,975	35,314	6월	11,314	24,554	35,868	7월	12,538	15,858	28,396	8월	2,925	8,313	11,238	9월	1,084	3,493	4,577	10월	1,950	8,160	10,110	11월	1,752	9,063	10,815	12월	3,157	4,725	7,882
구분	공사	항만	소계																																																			
1월	10,995	38,123	49,118																																																			
2월	11,787	46,669	58,456																																																			
3월	11,588	43,425	55,013																																																			
4월	6,250	28,025	34,275																																																			
5월	10,339	24,975	35,314																																																			
6월	11,314	24,554	35,868																																																			
7월	12,538	15,858	28,396																																																			
8월	2,925	8,313	11,238																																																			
9월	1,084	3,493	4,577																																																			
10월	1,950	8,160	10,110																																																			
11월	1,752	9,063	10,815																																																			
12월	3,157	4,725	7,882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3-3	<p>1. 팔레트 제품 적재시 최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요?</p> <p>2. 권역별 수행해야 할 조달품목을 구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조달품목들의 팔레트당 적재톤을 알 수 있는지요?</p> <p>3. 조달품목의 팔레트당 적재박스수 및 박스당 CBM과 기타삼다수와 감귤주스의 경우 각 거점이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요?</p>	<p>1. 팔레트 제품 적재시 최대 높이 (단위 : cm)</p> <table border="1" data-bbox="1211 422 2139 603"> <thead> <tr> <th>구분</th> <th>0.5 L</th> <th>2.0 L</th> </tr> </thead> <tbody> <tr> <td>제주삼다수</td> <td>162.5</td> <td>144.9</td> </tr> <tr> <td>vio제주V-water+</td> <td>160</td> <td>178</td> </tr> </tbody> </table> <p>2. 조달품목의 권역설정은 매우 유동적인 부분으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팔레트당 적재톤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에 제시되어 있는 업체현황을 통해 입찰참가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3. 조달품목의 팔레트당 적재박스수 및 박스당 CBM은 “3번” 답변과 기타삼다수와 감귤주스의 거점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36번 질의답변서 0920-1의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0.5 L	2.0 L	제주삼다수	162.5	144.9	vio제주V-water+	160	178
구분	0.5 L	2.0 L									
제주삼다수	162.5	144.9									
vio제주V-water+	160	178									

순 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0923-4	<p>1. 권역별 선정된 업체가 출하항 또는 양하항에 대한 항로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요청서상에 명기된 주항로를 바탕으로 운항해야 하는 것입니까?</p> <p>2. 발주방식 및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문의입니다. 오더 마감시점, 발주주기, 최소발주량의 기본적인 현행 오더 프로세스 사항, 제안을 위한 기본적인 제품 생산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p> <p>3. 제안서 작성시 어떤 형태(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1. 제안요청서내의 사업설명 또는 요청사항(항로운영 포함)에 대한 제반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준하여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항로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자가 제안할 사항입니다.</p> <p>2.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삼다수” 위탁판매사의 발주시점은 D-1 13:00이며, 마감시점은 17:00 수준입니다. vio제주V-water+의 발주시점은 전주 금요일 17:00 까지 발주되며 발주량은 익주 월~금요일까지 물량이 발주됩니다. 단, 긴급상황에 의한 당일 발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제안서 작성 방향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p>